

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」·「한국장애인개발원」

##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(MOU)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(이하 ‘협약기관’)은 상호  
긴밀한 협조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 
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협약 기관 간 장애인 고등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이해도를 제고하고,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협력분야)

협약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장애인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협력
2. 장애인고등교육 진로·취업지원 등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
3.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협력
4.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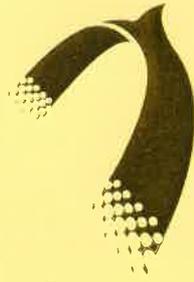
### 제3조(협약조항)

협약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협약 기관은 협력과 교류 시 각 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2. 협약 기관은 상호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,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.

### 제4조(비밀유지)

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협약 기간 중이거나 협약 기간 완료 후에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

**제5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**

본 협약은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,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**제6조(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**

본 협약은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,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협약의 변경·해지)**

본 협약의 변경·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논의를 통해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타)**

협약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본 협약 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8. 28.



**한국대학교육협의회**  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

회장 박상규

*박상규*



**한국장애인개발원**  
Korea Disabled People's Development Institute

원장 *이정현*